

I

대일수출 가공식품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제도 소개

□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제도

-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으로 가공식품을 처음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자로 하여금 사전 식품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안전성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첫 번째 수입이후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1년간 처음 발급받은 성적서를 인정하여 별도의 검사없이 통관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1년이 지날 경우 매년 1회씩은 수입업체가 식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 일본으로의 수출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별도의 소량 샘플수출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우나, 일본 후생성에서는 해외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수출업체가 한국내 일본 후생성이 인증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수입 검역단계에 제출하면, 일본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와 동일하게 인정받아 별도 검사없이 통관이 가능한 편리한 제도임
 - 후생성 인정 한국내 공적검사기관(50개소), 지정검사기관(4개소) 총54개소
 - * 리스트는 별첨 참고
- 본 제도와 관련하여 aT에서는 시험성적 비용의 90%(부가세 제외)까지 지원
 - 검사비 지원 대상 : 대일 농식품 수출업체
 - 검사비 지원 품목 : 김치, 막걸리, 두유, 청량음료, 소스류, 면류 등
- 본제도의 특징
 - 일본 도착후 일본내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던 것을 수출전 국내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음으로서 현지 도착후 신속한 통관, 검사비용 절감 및 제품 선도 유지 효과.
 - 한국내에서 사전검사를 통해 일본도착후 수입식품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
 - 단, 수출도중에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세균수 등에 대한 검사는 한국내 검사기관 성적을 인정하지 않아 별도 일본에서 받아야 함
-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한 안전성확보를 통해 현지 바이어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연결시킴으로서 한국산 대일수출식품의 경쟁력 향상기대

II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5년 9월)

일	품목명	제조사	부적합내용 및 공표일	수입자 명	조치상황
9월	냉동나물 (무가열섭취)	SUNCHEON NONGHYUP NAMDO FOOD	대장균군 양성 2015.9.9	넷츠후즈(주)	폐기 또는 반송 (전량보관)
	명란젓	CHANGHAE SEAFOOD., LTD	폴리솔리베이트 및 아초산나트륨, 솔빈산 칼륨 대량외 사용 2015.9.18	케이 앤 티	폐기 또는 반송 (전량보관)
	대과토마토	GYEONG BUK CORPORATION	잔류농약 플루켄코나졸 0.03PPM 검출 2015.9.18	마루모토	폐기 또는 반송 (전량보관)
	대과토마토	UNBONG NONGHYUP	잔류농약 플루켄코나졸 0.04PPM 검출 2015.9.18	난큐	폐기 또는 반송 (전량보관)
	카라긴 (바닷말 추출 다당류)	MSC CO.,LTD	미생물 한도 초과 세균검출 2.4×10^4 2015.9.24	아사히	폐기 또는 반송 (전량보관)

위반사례 합계 5건 발생

□ 시사점

- 냉동나물 및 카라긴의 경우 세균관리 철저를 통해 위반사례 재발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금년도 일본 검역소에서의 수입감시 중점 항목 중의 하나가 대장균군 위반 여부임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시 됨
- 명란젓의 경우 고추장에 사용되어지는 폴리솔리베이트 및 솔빈산칼륨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한국산 된장, 고추장류의 경우 일본 식품기준법상 된장류로 분류되지 않아 솔빈산칼륨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한국산 대과토마토의 경우 잔류농약인 플루켄코나졸 위반으로 인해 현재 일본 검역소에서 매회마다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야 통관이 가능한 명령검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시 됨.
 - 동일한 품목, 동일한 농약성분 검출이 계속될 경우 일본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 확인 때까지 잠정수입보류 조치를 취한 과거 사례가 있음